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

판 결

사 건	2021가소308564 손해배상(기)
원 고	1. A 2. B 3. C 4. D
피 고	1. E 2. F
변 론 종 결	2021. 12. 15.
판 결 선 고	2022. 1. 26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,330,000원, 원고 B, C, D에게 각 500,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. 2. 11.부터 2022. 1. 26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2/3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,900,000원, 원고 B, C, D에게 각 3,000,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. 2. 1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

가. 인정사실

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, 원고 A은 2020. 6. 20. 강아지 '■' (2020. 4. 8.생, 견종: 푸들)를 분양받아 아버지인 원고 B, 어머니인 원고 C, 여동생인 원고 D과 함께 키운 사실, 피고들은 반려견으로 '■' (견종: 골든 레트리버, 30kg 이상)를 키우고 있는 사실, 원고 A은 2021. 2. 11. 21:00경 ■를 반려견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대구 중구 동성로6길 61에 있는 동성로 스파크 앞 공간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방문하였는데, ■의 소변 배설을 위하여 ■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, 원고 A과 평소 아는 사이였던 피고 E이 ■를 부른 사실, ■는 피고 E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고 E에게 달려갔는데, 피고들의 곁에 있던 ■가 으르렁거리며 ■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다가 ■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물어 낚아챘고, 작은 체구의 ■는 끌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사실, 피고 E이 바로 ■를 안아 올려 정신을 잃은 ■의 몸을 문지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였고, 이후 원고 A이 ■를 넘겨받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며, ■를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, 병원 도착 당시 이미 ■는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던 사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 한다)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나. 책임의 인정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㉠의 주인(보호자)으로서 ㉠가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, 특히 ㉠의 견종은 골든 레트리버로서 대형 견종인데, ㉡와 같은 소형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, ㉠의 공격성을 미리 방지하거나, ㉠가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㉠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.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, 원고들의 반려견 ㉡는 ㉠에게 물려 내동댕이쳐짐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.

그러므로 ㉠의 주인이자 관리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다. 책임의 제한

다만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㉡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, ㉡가 피고 E에게 달려갈 때 원고 A은 멀찍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, 원고들도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,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은 플라마켓에서 간식을 판매하였고, 평소 위 플라마켓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였던 원고 A과도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, ㉡를 발견하고는 '귀엽고 반가운 마음'에 ㉡를 불렀던 점, ③ 피고들의 ㉠가 소형견 ㉡에게 '두개골 골절이나 뇌손상, 과다출혈' 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, 피고들의 책임을 70%로 제한하기로 한다.

2.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

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.

가. 재산상 손해

- ■■의 분양비 : 1,350,000원 인정
- 장레비 : 550,000원 인정

나. 책임의 제한

- 피고의 책임 : 70%
-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: 1,330,000원 $\{=(1,350,000\text{원}+550,000\text{원})\times 0.7\}$

다. 위자료

-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, 당사자의 성별, 나이 및 직업, 과실 및 피해의 정도, 이 사건 사고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은 1,000,000원, 원고 B, C, D은 각 500,000원씩으로 정한다.

라. 소결

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,330,000원(=1,330,000원 +1,000,000원), 원고 B, C, D에게 각 500,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판사 허용구

※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